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9월 16일, 정진욱의원 등 19인

나. 회부일자: 2025년 9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2026.3.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3.12.)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진욱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없음.

그런데 최근 중국의 공급 과잉, 탄소중립 규제 등으로 석유화학, 철강 업종 중심으로 산업위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해당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라도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사업재편계획기간에는 기업의 신용 변동가능성이 있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신용위험의 평가 등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재편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는 등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여러 제도개선 방안이 제기됨.

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하여 사업재편계획에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사회공헌 계획을 포함할 경우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금융 관련 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 산업위기 사업재편 범위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포함·확대

개정안은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 정의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을 포함하도록 추가·확대하고(안 제2조제6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주된 산업에 대한 사업재편계획 승인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 9. (생 략)	제2조(정의) ----------. 1. ~ 5. (현행과 같음) 6. ----------제8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및 제10조에----------. 7. ~ 9.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①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주무부처의 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 ② ~ ⑪ (생 략)	제10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① ----------.----------.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제10조에---------- ② ~ ⑪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4조는 동 법률(이하 “기업활력법”)의 적용대상을 공급안정 사업재편(제1호), 미래 사업재편(제2호) 및 산업위기지역 사업재편(제3호),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음.

[표 2] 「기업활력법」 적용대상 구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공급안정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 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

나. 공급망 위협 해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생산, 저장 및 대체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 안정 활동을 하는 사업재편 2. 미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제12항에 따른 사업재편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미래 사업재편 판정을 받은 기업 **3.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4. 삭제 5. 삭제

그리고 현행법 제2조는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제4장, 제5장 등 주요 지원내용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표 3]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조문목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추진체계 등 제5조(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제6조(지역 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3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의 지정 등 제7조(산업위기 예방조치) 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제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제11조(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제12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제13조(긴급지원)

제14조(절차의 신속 진행) 제4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15조(자금 지원 등) 제16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제17조(인력양성 지원 등) 제18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제19조(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 제20조(지원사업의 연계・우선지원) 제5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특례 제21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제22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제23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4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제6장 보칙 제25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26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공유) 제2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7장 벌칙 제28조(벌칙) 제29조(과태료)

그런데 「지역산업위기대응법」제8조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지역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신청을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선제적 대응 시급성, 국가의 적극적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4]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및 지원 등

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이하 "선제대응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이 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규모 재해·질병이나 국제정세 변동이 발생한 경우
2.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주요 사업장의 폐쇄·이전 등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지 여부
2.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3. 선제대응지역계획이 타당한지 및 이행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융자 등 금융·재정 지원
2.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사업화 지원
3. 국내 판매, 수출 지원과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문
4.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실직자·퇴직자의 재취업교육 등 고용안정 지원
5. 그 밖에 산업위기의 선제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⑥ 그 밖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해서도 산업위기지역 사업재편에 대한 각종 특례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하려는 취지로써,

이에 따라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히 악화되기 전에 「상법」 등의

특례를 허용하고 세제·금융·R&D·고용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산업 구조전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2025년 11월 현재 전남 여수시, 충남 서산시 및 경북 포항시[1)]가 각각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표 5]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지원 관련 조문목록

제4장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제1절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제15조(소규모 분할에 대한 특례)
제16조(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
제17조(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제18조(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제19조(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제20조(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제2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제21조(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제22조(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제23조(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제2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제24조의2(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
제24조의3(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제25조삭 제
제26조(특례 기간의 기산점)
제26조의2(특례적용의 요건)
제3절 세제 및 자금지원
제27조(세제지원)
제28조(자금지원)
제29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제30조(중소・중견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제31조(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제31조의2(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31조의3(지역균형발전 특례)
제5장 규제애로 해소 지원
제32조(법령등의 해석 및 적용의 확인)
제33조(기업 등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의 요청)
제34조(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조치)
제35조(이의신청)

1) ① 전남 여수시 '25.5.1.~'27.4.30., 석유화학, ② 충남 서산시 '25.8.28.~'27.8.27., 석유화학, ③ 경북 포항시 '25.8.28.~'27.8.27., 철강

2. 설비감축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자금지원

개정안은 승인기업(사업재편계획 승인받은 기업, 합병·분할신설 기업 포함)이 설비를 감축하는 경우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사업재편계획(사회공헌 계획 반드시 제출)에 포함되었거나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및 제3항 등).

[표 6]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① (생 략) ②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사업재편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내용 8. ~ 11. (생 략) ③ ~ ⑨ (생 략)	제9조(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6. (현행과 같음) 7. ---------- 내용(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사회공헌 계획을 포함한다) 8. ~ 11. (현행과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28조(자금지원) ① (생 략)	제28조(자금지원)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공장의 신설·이전·증설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또는 설비의 감축 등과----------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주무부처의 장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회공헌 계획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한 경우
<신 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의 침체, 경제여건 악화 등을 고려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2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된

기업에 대해서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는 기보·신보, 산은·기은 등에서 융자·보증시 금리·요율 등을 우대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및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p 가산 지원, 자산매각 지원(S&LB 방식으로 캠코에서 유동성 공급, '23년 500억 규모)을 하고 있음.

[표 7] 현행법상 자금지원

제28조(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인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시설개체 등 설비투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공장의 신설·이전·증설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공장의 신설·이전·증설을 위한 입지 확보, 공장 건축,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 3. 승인기업의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출시를 위한 경영혁신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과 규모,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현행법 제28조제2항제2호는 공장 신설·이전·증설만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공장·설비 감축 비용은 비교적 적어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러나 최근 석유화학 업계 등에서는 글로벌 공급과잉 위기 등으로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개별 기업으로서는 설비감축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업계 내 지속적인 영향력 축소 및 기회비용 등을 우려하여 이를 선뜻 실행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설비감축에 대해서도 자금지원을 통해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해소하고 사회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안 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는 각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사회공헌계획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제1호)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침체, 경제여건 악화 등을 고려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2호) 자금지원을 허용하려는 것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현행법 제10조제7항에서 약칭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뜻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여 그 중 자산총액이 GDP의 0.5% 이상(2025년 기준 11.6조원[2])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음.

---

2) 2025. 5. 1.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5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92개 지정"
- 명목 GDP 확정치(2,324조 원)의 0.5%에 해당하는 11.6조 원 이상인 46개 집단(소속회사 2,09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도는 상호출자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등[3]을 통해 지배구조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유·출자 구조의 건전성을 유지하며 계열사 간 부당지원 및 내부거래를 방지하려는 취지임.

「기업활력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정도로 규모가 큰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을 위한 절차간소화 등 법률상 특례는 부여하되, 이에 필요한 자금은 자구노력을 통해 조달하도록 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왔음.

그러나 개정안은 최근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되는 석유화학 업계의 경우 이미 대출규모가 상당하다는 점[4] 등을 고려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도 자금지원을 허용하고자 함.

특히 제2호의 경우에는 기업이 사회공헌 계획을 포함·제출한 경우에 대해 해당 사업재편계획이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자금지원을 하려는 취지로 보임.

한편, 제3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침체, 경제여건 악화 등을 고려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지원요건을 상당히 탄력적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임.

---

3)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정책 설명,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696
4) "구조조정 미루는 석화업계에…정부, 채권단 통해 33조 돈줄 압박", 2025. 9. 24.,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11428419?utm_source=chatgpt.com

3. 승인기업 금융평가 특례 부여

개정안은 승인기업에 대하여 재무구조 평가, 신용위험 평가 등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표 8]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2(금융 관련 평가에 관한 특례) ① 승인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 관련 평가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 1. 「은행법」 제3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에 따라 선정된 주채무계열 및 소속기업체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신용위험의 평가 ② 제1항에 따른 유예의 기준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이 경영지도기준 및 이에 따른 신용공여관리기준(시행령)을 준수하고,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에 따라 주채무계열 및 소속기업체를 은행에 선정·통보하여 대기업 신용위험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그리고 금융감독원세칙인 「은

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주채무계열 및 소속기업체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5]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주채권은행이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을 반드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채권은행이 아닌 채권은행도 신용위험평가결과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이를 지체 없이 주채권은행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표 9]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신용위험평가

제4조(신용위험의 평가) ① 주채권은행은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주채권은행이 아닌 채권은행은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주채권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주채권은행은 해당 거래기업의 부실징후 유무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은 해당 채권은행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위험평가의 대상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는 한국이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어 특정 대기업 및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권 전반에 전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신용공여비중이 큰 '주채무계열' 및 소속기업체를 선정하여 이를 은행들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주채권은행과 다른 채권은행이 함께 위험정보를 공유·평가하도록 한 것임.

5) 금감원이 매년 총차입금이 많은 계열기업군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미흡 시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 후 자구계획 이행 점검

그러나 2022년 10월 금융감독원 - 산업통상자원부 - 은행연합회 업무협약[6]에 따라 산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신용위험평가를 사업재편기간 동안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주채무계열 평가과정에서도 가점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업무협약을 영속적으로 법제화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기존 업무협약은 주채무계열 평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뿐 이를 면제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동 개정안 중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 유예에 대해서는 주채무계열 내 특정 기업이 평가유예된다면 잔여기업 및 전체 주채무계열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어려워져 제도 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안 심사시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은 재무구조 평가 및 신용위험 평가 유예를 결정하는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6) "3高 시대,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산업계-금융권 하나가 되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 10. 6.
- 한편,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 은행의 신용위험평가시 예외**를 두고, 주채무계열 평가 과정에서 가산점을 부여하여 기업이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변화에 매진토록 지원하겠습니다.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7. 기타 사항

없 음.